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(우)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 3층 [http://www.kma.org] / 전화(02)6350-6571 / 전송(02)790-8911
보험국장 백영기 [6574] / 보험정책급여팀장 고영옥 [6581] / 팀원 박소영 [6571] / E-mail 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41-07185호

시행일자 2026. 9. 17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」 개정·공포 안내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
 가. 대의협 841-05795(2026.8.18.)
 나. 국토교통부령 제1622호 (2026.9.10.)

3.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, 기 안내드린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」 일부 개정령안 개정·공포 안내(대의협 841-05795, 2026. 8. 18.)에 따라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」이 다음과 같이 개정·공포된바, 이를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'공지·뉴스-건강보험 고시 및 지침 안내'에도 기 안내함

□ 주요 개정 내용

○ **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서식 마련 (제6조의2, 제6조의3 신설)**
 -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 및 철회 통지에 관한 서식 마련

○ **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 범위 확대 (제11조의2 제2항 제2의2호 신설)**
 - 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 등을 추가

※ 시행일 : 2026. 9. 10.

붙임 :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공포안 1부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

수신처: 각 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개원의협의회장,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